

21. 주택공제조합 용자업무규정개정내용

자료제공 : 주택사업공제조합

1. 개정사유

조합이 주채무조합원의 출자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시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자부담을 줄여 연대보증채무부담 완화

2. 개정내용

용자 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 8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용자이자자는 용자일로부터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지분취득일에 90일을 가산한 날까지만 징수한다. 다만, 지분의취득·관리 및 처분규정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에도 제16조 제2항을 적용한다. 다만,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지분취득일로부터 이 규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까지에 해당하는 용자이자를 징수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 16조 이자등</p> <p>용자이율과 어음할인요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되 용자이자는 후취하며 어음할인료는 취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 16 조</p> <p>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 8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용자이자는 용자일로부터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지분 취득일에 90일을 가산한 날까지만 징수한다. 다만, 지분의 취득·관리 및 처분규정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